



: 2017-11-15

## 광 주 고 등 법 원

### 제 1 행 정 부

### 판 결

사 건 2017누4016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REDACTED]군수  
제 1 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17. 5. 18. 선고 2016구단12137 판결  
변 론 종 결 2017. 9. 7.  
판 결 선 고 2017. 9. 28.

### 주 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5. 4. 원고(F)에 대하여 한 취득세 19,684,630원, 농어촌특별세 939,570원, 지방교육세 1,409,370원의 납세의무는 원고에게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원고는 위와 같은 취득세 등에 대하여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다가 이 법원에서 납세의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 이 유

### 1. 처분의 경위

가. [redacted]군 B 종교용지 4,737㎡, C 임야 1,815㎡, D 임야 26,230㎡(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재단법인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가 2015. 12. 30.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16. 1. 8.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F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위와 같이 취득하면서 피고에게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다. 한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6. 2. 15.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2016. 3. 16. 위와 같이 F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에 피고는 2016. 5. 4. F에게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F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증여계약의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되었다는 이유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종전에 면제하였던 취득세 19,684,630원, 농어촌특별세 939,570원, 지방교육세 1,409,370원을 납부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F의 대표자인 원고는 2016. 7. 20.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10. 31.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 13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재단법인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다가 재단법인 E에 대한 법인설립허가가 취소되자 재단법인 E은 원고에게 임시로 이 사건 각 토지를 명의신탁하여 두었던 것이다. 그 후 별도의 재단법인 G를 설립하여 위와 같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재단법인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원고가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 'F'라는 법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징수 과정 등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다툼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납세의무가 원고에게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한다.

###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이 사건 소와 같은 납세의무 부존재확인 소는 공법상의 법률관계 그 자체를 다투는 소송으로서 당사자소송이라 할 것이므로,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제39조에 의하여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인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가 피고적격을 가진다(대법원 2000. 9. 8. 선고 99두276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소에서 피고로 삼은 ■■■군수는 취득세 등의 부과·징수를 담당하는 행정청일 뿐 취득세 등의 귀속주체가 아니므로 이 사건 소의 피고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원고는 이 법원 제1차 변론기일에서 피고 변경에 관한 이 법원의 석명에 대하여 피고를 ■■■군으로 변경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표시하였다).



: 2017-11-15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 4.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창한
	판사	최현정
	판사	한종환